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가이드

무재해 운동 개시부터 목표달성 인증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Mission

우리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Vision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 컨설팅  
기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박종선



1964. 7. 6.



근로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 활동 증진 · 회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



안전진단 및 컨설팅, 안전교육, 안전검사,  
안전관리, 건설안전진단 및 컨설팅

1964

협회 설립

1975

안전관리자 직무훈련 대행기관

1983

종합안전 진단기관

1988

안전관리 대행기관 /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교육기관

1996

안전경영진단 평가기관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기관

1998

종합지정 검사기관

2007

KOLAS 국가공인 검사기관

2008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OHSAS18001인증(BSI영국표준협회)

2012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기관

2014

곤돌라 안전인증기관

학교 석면 안전관리인 교육기관

2018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2021

현재



조직 현황



지역본부  
7개



전국을 망라하는 양질의 종합안전컨설팅

지회  
21개

55년간 쌓아온 안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앙회 및 전국 1,060여명의 고급기술인력이 양질의 안전기술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총 1,070 명



OHSAS 18001 심사원 22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심사원  
(K-OHMS) 5명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심사원  
(IRCA) 2명

기술사 53명

기사 1,287명 중복포함

기타 826명 중복포함

박사 13명

석사 153명

(2019년 6월 기준)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CONTENTS

**I**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소개

**II**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가이드

**III**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가이드





I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이란?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 추진 시 정한 **일정기간과 일정목표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재해운동 개시부터 목표달성 인증까지 무재해 목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재해운동은 계속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동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참여(개시/인증 신청) 대상

- 무재해운동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개시/인증)

## 무재해 운동 개시/ 목표달성 인증 신청절차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개시/인증)



## 개시/인증 신청방법

- 신청서식 다운
  - 협회 홈페이지 ([www. Safety.or.kr](http://www.Safety.or.kr))
    - ※ 경로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회원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0507-351-7006)
  - ※ 이메일 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심사료

- 인증심사료 : 350,000원 (협회 정회원 무료)
  - ※ 인증서, 인증패 지급



#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개시/인증)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 ➤ 무재해운동 개시 선포 후 30일 이내에 신청

※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을 준용하여 설정

### ➤ 개시신청 제출서류

-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서(서식)
- 상시근로자수 산정표(서식)
- 사업자등록증
-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 ➤ 무재해 목표달성 후 60일 이내에 신청

### ➤ 인증신청 제출서류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서식)
- 상시근로자수 산정표(서식)
-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또는 일수 산정표(서식)
-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서식)
-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개시신청 시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기록·인증을 받은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무재해 달성 기간이 인정됩니다.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가이드





### ☉ 무재해 목표설정 기준 (일수적용)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준용하여 설정

[별표 1]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제5조 관련, 적용기간 :2019.1.1. ~ )

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산업	중분류업종/근로자수	50인 미만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일	일	일	일	시간	시간	시간
광업	석탄광업	140	84	42	21	90,000	180,000	360,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60	227	114	57	120,000	240,000	460,000
	채석업	282	169	85	42	150,000	300,000	560,000
	석회석광업	338	312	260	158	252,000	300,000	560,000
	기타 광업	182	156	84	42	90,000	180,000	360,000
제조업	식품제조업	546	494	455	227	442,000	2,670,000	2,670,000
	담배 제조업	624	546	520	402	858,000	858,000	960,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546	494	455	364	1,296,000	2,709,000	2,709,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546	494	455	290	463,000	704,000	860,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7	312	197	99	157,000	300,000	560,000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인쇄물 가 공업	494	442	390	223	371,000	420,000	760,0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624	546	520	416	1,755,000	793,000	960,000
	화학제품 제조업	494	442	390	312	627,000	534,000	760,000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종분류(중분류) 200인 사업장의 식품제조업인 경우

중분류업종/근로자수	200 ~ 299인
식품제조업	227일

1배수 목표 227일 설정



### ☉ 무재해 목표설정 기준 (시간적용)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준용하여 설정

[별표 1]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제5조 관련, 적용기간 :2019.1.1. ~ )

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산업	중분류업종/근로자수	50인 미만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일	일	일	일	시간	시간	시간
광업	석탄광업	140	84	42	21	90,000	180,000	360,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60	227	114	57	120,000	240,000	460,000
	채석업	282	169	85	42	150,000	300,000	560,000
	석회석광업	338	312	260	158	252,000	300,000	560,000
	기타 광업	182	156	84	42	90,000	180,000	360,000
제조업	식품제조업	546	494	455	227	442,000	2,670,000	2,670,000
	담배 제조업	624	546	520	402	858,000	858,000	960,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546	494	455	364	1,296,000	2,709,000	2,709,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546	494	455	290	463,000	704,000	860,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7	312	197	99	157,000	300,000	560,000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인쇄물 가 공업	494	442	390	223	371,000	420,000	760,0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624	546	520	416	1,755,000	793,000	960,000
	화학제품 제조업	494	442	390	312	627,000	534,000	760,000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종분류(중분류) 400인 사업장의 식품제조업인 경우

중분류업종/근로자수	400인
식품제조업	442,000시간

1배수 목표  
442,000시간 설정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가이드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적용기간 : 2019. 1. 1.~)

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50인 미만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산업	중분류업종/근로자수	일	일	일	일	시간	시간	시간
		광업	석탄광업	140	84	42	21	90,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60	227	114	57	120,000	240,000	460,000
	채석업	282	169	85	42	160,000	300,000	560,000
	석회석광업	338	312	260	168	262,000	300,000	560,000
	기타 광업	182	166	84	42	90,000	180,000	360,000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546	494	455	227	442,000	2,670,000	2,670,000
	담배 제조업	624	546	520	402	858,000	858,000	960,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546	494	455	364	1,296,000	2,709,000	2,709,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546	494	455	290	463,000	704,000	860,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7	312	197	99	167,000	300,000	560,000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494	442	390	228	371,000	420,000	760,0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624	546	520	416	1,755,000	793,000	960,000
	화학제품 제조업	494	442	390	312	627,000	534,000	760,00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624	546	520	416	952,000	952,000	960,000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01	181	90	45	180,000	360,000	660,000
	고무제품 제조업	546	494	455	246	393,000	480,000	860,000
	유리 제조업	494	442	390	228	364,000	420,000	2,363,00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494	442	390	230	368,000	420,000	760,000
	시멘트 제조업	546	494	435	218	348,000	480,000	860,00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416	390	325	196	314,000	360,000	660,000
	금속 제련업	546	494	455	364	1,038,000	1,038,000	1,038,000
	금속재료품 제조업	416	390	255	127	203,000	360,000	660,000
	도금업	494	442	390	308	492,000	492,000	760,000
	기계기구 제조업	416	390	292	146	233,000	360,000	660,00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546	494	455	362	578,000	2,323,000	2,232,000
	전자제품 제조업	624	546	520	416	1,366,000	3,510,000	3,720,000
	선박 건조 및 수리업	494	422	365	183	292,000	420,000	760,00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494	442	390	189	210,000	420,000	760,00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494	442	331	165	264,000	420,000	760,00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546	494	455	364	663,000	1,844,000	1,844,000
	수제품 제조업	546	494	455	364	1,008,000	1,008,000	1,008,000
	기타 제조업	494	442	390	241	385,000	420,000	760,000



###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적용기간 : 2019. 1. 1.~)

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50인 미만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산업	중분류업종/근로자수	일	일	일	일	시간	시간	시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24	546	520	416	1,666,000	1,853,000	1,853,0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케도 및 삭도운수업	624	546	520	416	1,755,000	540,000	960,000
	여객자동차운수업	494	442	390	269	431,000	420,000	760,000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182	156	130	104	460,000	460,000	460,000
	화물자동차운수업	338	312	260	134	214,000	300,000	560,00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416	390	266	133	212,000	400,000	660,000
	항공운수업	546	494	455	364	905,000	1,001,000	1,001,000
	운수 관련 서비스업	624	546	520	369	590,000	420,000	2,161,000
	창고업 통신업	494 624	442 546	390 520	312 416	600,000 778,000	600,000 1,823,000	760,000 1,823,000
입업	입업	327	196	169	84	314,000	480,000	860,000
어업	어업	182	156	102	51	90,000	180,000	360,000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182	156	130	104	460,000	460,000	460,000
농업	농업	624	546	374	187	298,000	540,000	960,000
기타의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546	494	455	256	409,000	480,000	860,00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416	285	142	71	180,000	360,000	660,000
	기타의 각종사업	624	546	520	416	1,492,000	1,405,000	1,405,000
	전문기술서비스업	624	546	520	416	1,755,000	1,793,000	1,793,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24	546	520	416	900,000	1,097,000	1,097,000
	교육서비스업	624	546	520	416	1,755,000	3,036,000	3,036,00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24	546	520	416	1,492,000	4,105,000	4,105,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24	546	520	416	1,492,000	1,405,000	1,405,00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494	442	345	172	275,000	420,000	76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624	546	520	369	590,000	420,000	2,161,000
금융 및 보험업	금융보험업	624	546	520	416	1,755,000	3,510,000	4,567,000



### ㉔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적용기간 : 2019. 1. 1.~)

#### 나. 건설업

공사규모	5억미만	5억이상~50억미만	50억이상~100억미만	100억이상~500억미만	500억이상
목표시간	127,000	130,000	260,000	455,000	910,000

- ※ 공사규모는 총공사금액의 기준으로 분류하며,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 상의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해당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예: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의 시가 환산액 등)을 포함하며,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예: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출이자, 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모델하우스의 건립비, 분양 관련 경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 각종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공사(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서 자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함
- ※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철소, 정유소, 발전소 등에 상주하면서 시설관리 및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장은 건설업의 목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원청사업장의 업종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함.
- ※ 건설업중 소분류(사업세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관리사업”은 건설업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에 따라 적용한다.

산업	사업세목/근로자수	50인 미만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일	일	일	일	시간	시간	시간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사업	416	263	131	66	180,000	360,000	660,000



### ☉ 무재해 목표 일수(시간) 산정기준

- 공휴일 등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재해 시간 또는 일수에 산입
-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

※ 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건설업 이외 업종은 1일 8시간
- 건설업 1일 10시간

####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종분류(중분류) 200인 사업장의 식료품제조업인 경우

중분류업종/근로자수	200 ~ 299인
식료품제조업	227일

- 개시일 : 2019. 1. 1.
- 공휴일에 1명 이상 근무함

※ 달성기간 : 2019. 1. 1. ~ 2019. 8. 15. 1배수 227일 달성

####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종분류(중분류) 400인 사업장의 식료품제조업인 경우

중분류업종/근로자수	400인
식료품제조업	442,000시간

- 개시일 : 2019. 1. 1.
- 달성기간 : 2019. 1. 1. ~ 6. 17.  
(139일, 공휴일 28일 제외)
- 근로자수 변동 없으며,
- 공휴일은 출근 인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444,800시간 = 139일 × 8시간 × 400명

1배수 2019. 5. 19. 달성 444,800시간(442,000시간)



### 개시신청 작성·제출서류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1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서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건설업 현장명)		대표자 (건설업 현장소장)	
소재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산재보험 상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2 1배수 목표

2 사업종류 (중분류업종)		주생산품 (공사종류)	
상시근로자수 (건설업 총공사금액)	계 (총명원)	생산직(현장직)	사무직
3 개시일자		4 목표시간(기간)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우리 협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 수집 · 이용 목적 : 무재해운동 추진과 관련된 사업장 이력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협회의 정책자료로 활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개인정보 :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사무실 · 휴대용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나. 사업장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목표관리사업 목적 완료시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무재해운동의 개시, 인증 등의 제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의여부 : 예□, 아니오□】

년 월 일

대 표 자(현장소장) :

(서명 또는 날인)

①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서 서식 작성 시 공란이 없도록 빠짐 없이 작성 한다.

② 사업종류(중분류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종분류 (중분류)’를 기재

③ 개시일자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무재해운동 개시를 선포한 일자를 기재

※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은 후 재해가 발생하여 재개시 한 경우 재개시 일자를 기재

④ 목표시간(기간)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시당시 업종 및 규모에 맞는 시간(일수)를 기재



### 개시신청 작성·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별지 제2호 서식]

**1**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해당 무재해 인증을 위한 확인용]

월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b>2</b> 개시, 재개시, 재설정 일자		

※ 개시일, 재개시일 또는 재설정일 직전 3개월  
 ※ 예시) 개시일이 2018.2.15일 경우 : 2018년 1월 및 2017년 12월, 11월 기재

**3**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 수 산정표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확인용]

월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금번 달성일(재설정 일자)		

**해 당 없 음**

※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재설정일(달성일) 직전 3개월  
 ※ 예시) 달성일이 2019.2.15일 경우 : 2019년 1월 및 2018년 12월, 11월 기재

① 개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만을 작성한다.

※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 수 산정표 (해당없음)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건설업은 공사계약서를 제출함

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무재해운동 개시를 선포한 일자를 기재

※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은 후 재해가 발생하여 재개시 한 경우 재개시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

③ 작성자, 확인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으로 반드시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함



## 개시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은 경우 무재해 인증서

### ※ 제출서류 예시

공장등록증(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법인소재지)  
 업종: 공장소재지, 업종  
 한국산업안전공단

〈공장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장명: [ ]  
 사업장소재지: [ ]  
 사업종류: [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귀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사업장명: [ ]  
 대표자: [ ] 부러  
 무재해기간: [ ] 까지  
 무재해시간(일수): [ ]  
 달성률: [ ]  
 위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 결과 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인증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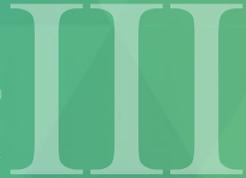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가이드







### 개시신청 작성·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별지 제2호 서식]

####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해당 무재해 인증을 위한 확인용]

월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개시, 재개시, 재설정 일자		

- ③ 개시, 재개시, 재설정 일자
- \* 개시일, 재개시일 또는 재설정일 직전 3개월
  - \* 예시) 개시일이 2018.2.15일 경우 : 2018년 1월 및 2017년 12월, 11월 기재

- ④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②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 수 산정표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확인용]

월	상시근로자수(명)	월 누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월 누계 근로자수÷3월)		
급변 달성일(재설정 일자)		

- \* 다음 배수 목표설정을 위한 재설정일(달성일) 직전 3개월
- \* 예시) 달성일이 2019.2.15일 경우 : 2019년 1월 및 2018년 12월, 11월 기재

① 상시근로자수 산정표, ② 목표달성일 직전 3개월 근로자수 산정표를 모두 작성한다.

※ 건설업은 공사계약서를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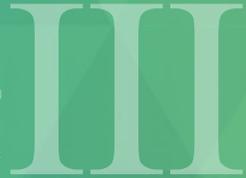
③ 개시, 재개시, 재설정 일자

- 개시일자 : 무재해 운동을 사업장에서 최초 개시한 일자
- 재개시 일자 : 재해가 발행한 후 무재해 운동을 재개시한 일자
- 재설정 일자 : 무재해 매 배수 달성 후 다음 목표를 재설정 한 일자

※ 과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직후 재설정 일자를 기재

④ 작성자, 확인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으로 반드시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함





### 개시신청 작성·제출서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일수 산정표)

[별지 제5호 서식]

####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 사업장명 :
- 소재지 :
- 무재해 달성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무재해 달성배수(시간 또는 일수) : ○배(○○○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됨이 없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 추후라도 은폐된 재해가 발견된 시에는 협회 무재해 목표관리 사업 운영규칙 제9조(무재해 인증 및 확인 사업장에 대한 취소)에 의거하여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 등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대표자(현장소장) : (서명 또는 날인)

○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 만약 인증 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취소 및 인증서 회수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함

○ 반드시 사업장대표자, 건설업의 경우 현장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개시신청 제출서류

-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발급기간은 최초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일부터 달성한 날까지로 한다.

기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업장관리번호		( )월 일
사업개시번호		( )년 ( )월 일
사업장	명칭	
	주소	
사업장개시사업장	명칭	
	주소	

위 사업장은 무재해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으로 2017.01.01 부터 2018.08.31 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4일 이상의 요양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 )월 일  
대표자 ( )는 서명)

### 확 인 서

위 사업장은 2017.01.01 부터 2018.08.31 까지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산재 요양신청서 반려 사실 없음

( )년 ( )월 일  
근로복지공단 (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감사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